

대학원 컴퓨터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컴퓨터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학과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컴퓨터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컴퓨터학과 소속 교수들은 컴퓨터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컴퓨터학과에는 소프트웨어, 응용컴퓨터, 모바일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등 컴퓨터학과와 관련된 핵심 과목들과 다양한 융합 교과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제5조 (과목개설) 과목개설은 직전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 신청을 받으며, 개설 교과목 수가 많아 조율이 필요할 경우 가장 최근에 개설되었던 교과목에게 가장 낮은 우선권을 준다.

제6조 (교·강사 배정) 교·강사 배정은 과목 개설시 개설을 요청한 교·강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동일 교과목에 대한 동시 개설이 요청될 경우 대학원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지도 받기를 원하는 교수와 사전에 협

의하여, 마감일 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박사 과정 학생은 전공 분야의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기 위하여 종합학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을 통과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하여야 한다. 통과를 위한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종합학력시험에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8년도 1학기부터 면제 기준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폐지)

	면제 기준	면제 대상자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제 (교신저자, 제 1저자 포함) 시 면제	석사 및 박사과정 공통
2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교신저자, 제 1저자 포함) 시 면제	석사 과정
3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교신저자, 제 1저자 포함) 시 1과목 면제	박사 과정

2. 2018년도 1학기 이전 면제 기준: 성적에 따른 면제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그 외의 기준은 각 전공별 내규에 따른다.

	면제 기준	면제 대상자
1	각 과목당 90점 이상일 시 면제	석사 및 박사과정 공통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시험의 면제 조건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하다.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선택 가능)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학위 취득) 컴퓨터학과에서 학위취득 방법은 학위논문으로만 가능하다 (연구논문, 과제보고서, 작품으로 대체 불가).

제12조 (학위취득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

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논문의 심사) 논문 심사는 1회의 예비 심사와 1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사 과정의 경우 필요하면 추가적인 중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3회 심사). 최종 심사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행한다. 단, 고용 계약형 과정으로 입학한 석사생의 경우 논문 심사를 한번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학위 논문 심사 자격)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 자격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단, 박사의 경우 지도 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자가 제 1저자로 포함된 논문을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BK21 인정 우수 해외 학술대회 프로시딩 또는 SCIE급 저널에 최소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학위논문 심사 자격을 부여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 위원은 석사의 경우 지도 교수 포함 3인, 박사의 경우 지도 교수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석사의 경우 모두 본교 전임 교수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박사의 경우 외부 인사 2인을 포함한다. 이때 외부 인사는 박사학위 소지자야 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해당 사항 없음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7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1/2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위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 학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